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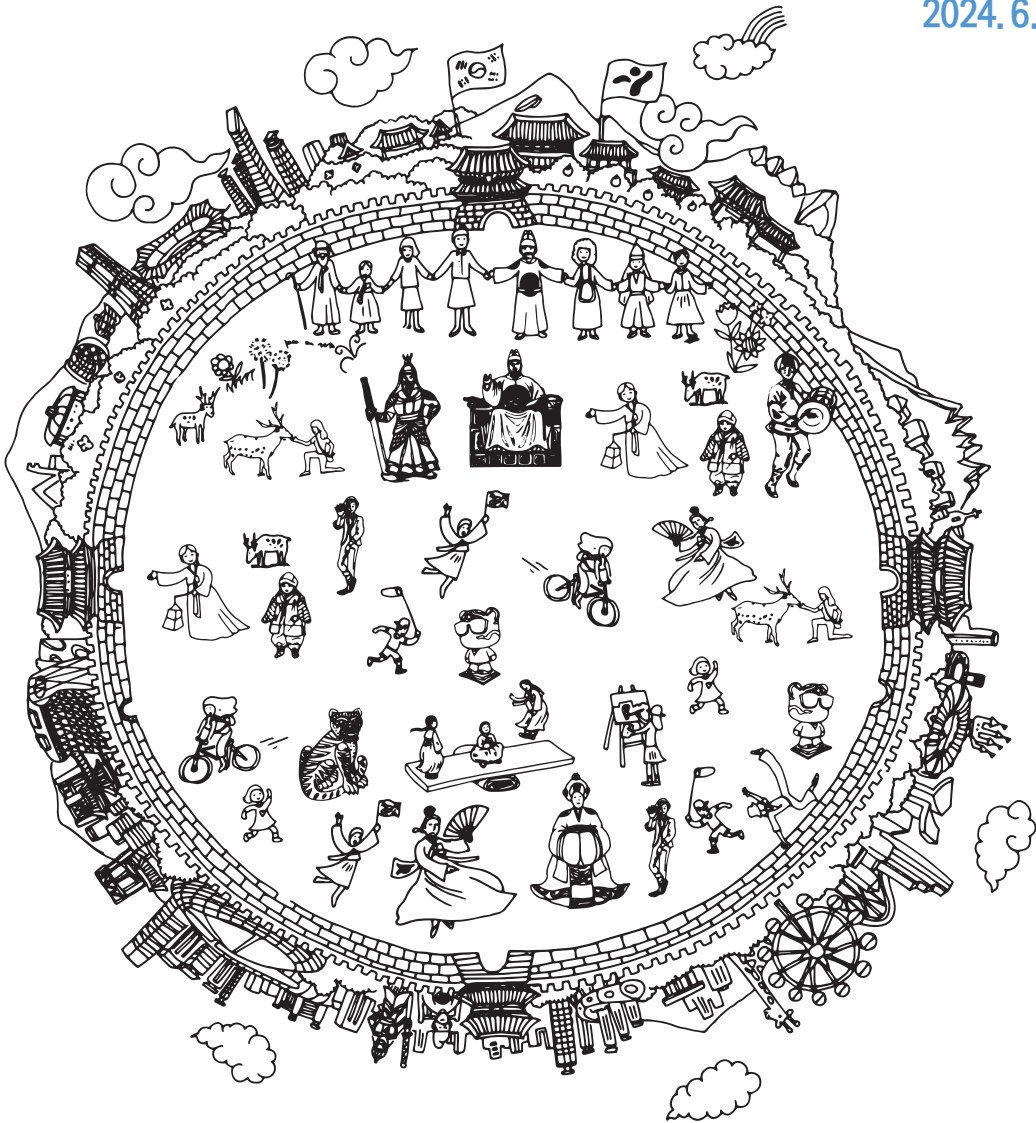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985호(그2)
2024. 6. 13.(목)



목 차

◆ 공 고

제2024-1781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781호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3231호)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.

2024년 6월 13일

서울특별시장

1. 지정지역 : 서울특별시 강남구, 송파구 일원 14.4km²

대 상 지 역			면적(km ²)	지정대상	비고
서울특별시	합 계		14.4	아파트 용도 지정	
	강남구	청담동, 삼성동, 대치동	9.2		
	송파구	잠실동	5.2		

※ 건축법시행령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2호가목인 경우로 한정

2. 지정기간 : 2024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m ² 초과
	상업지역	15m ² 초과
	공업지역	15m ² 초과
	녹지지역	20m ²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m ²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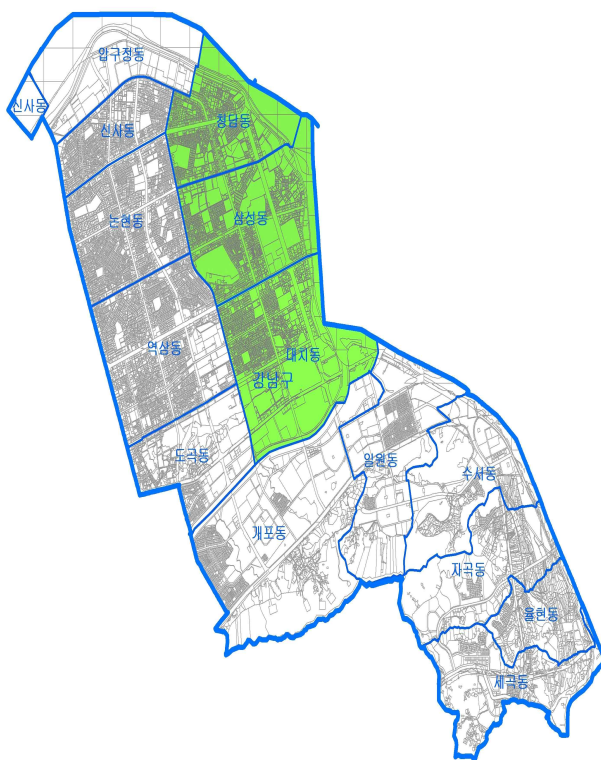
4.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

*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

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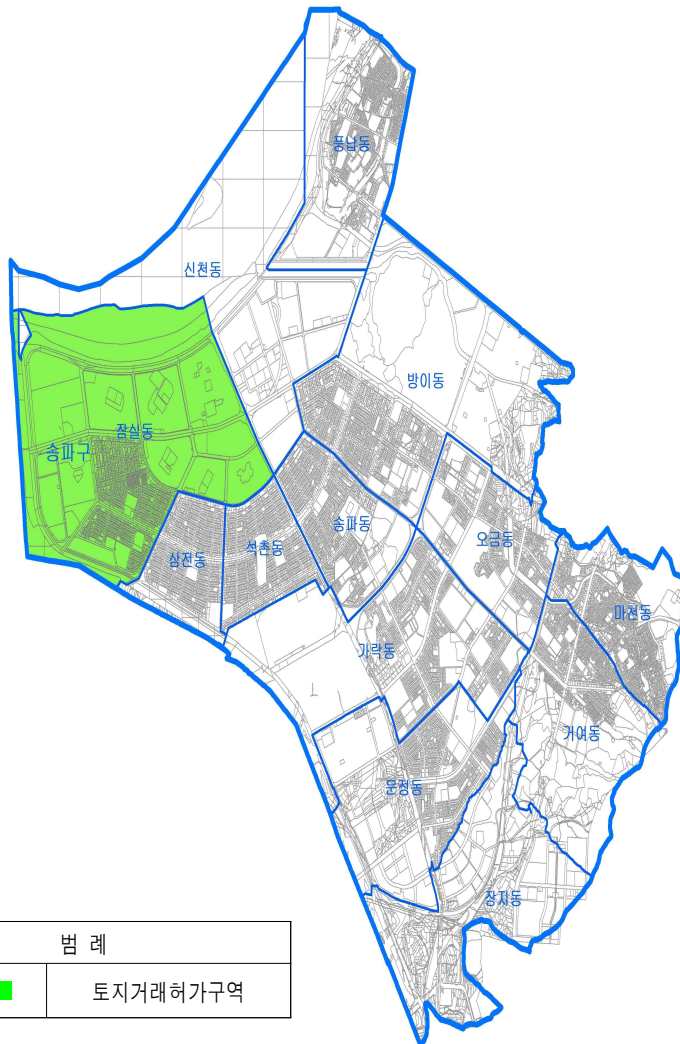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세부 지형도 (용도별 특정 지정)

○ 서울 강남구

청담동(2.3km²), 삼성동(3.2km²), 대치동(3.7km²)

범 례	
토지거래허가구역	

○ 서울 송파구



잠실동 (5.2km²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